

# K 수직형 스마트팜 발전소 1호 협동조합 정관

2024.07.01.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 협동조합은 "K 수직형 스마트팜 발전소 1호 협동조합"이라 한다. (이하 "조합"이라 한다.)

### 제2조 (목적)

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K 수직형 스마트팜 발전소의 운영, 관리, 생산물의 판매 및 관련 부대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조합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689에 둔다.

### 제4조 (사업의 종류)
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.

- K 수직형 스마트팜 발전소의 설치, 운영 및 관리
- 생산물의 가공, 유통 및 판매
- 스마트팜 관련 기술 연구 및 교육 사업
-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
-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5조 (사업의 종류)
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.

- K 수직형 스마트팜 발전소의 설치, 운영 및 관리
- 생산물의 가공, 유통 및 판매
- 스마트팜 관련 기술 연구 및 교육 사업
-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
-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합원

### 제5조 (조합원의 자격)

-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, 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조합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### 제6조 (조합원의 권리)

- 참여 권리: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정보 제공 권리: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, 재무상황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.
- 이익 분배 권리: 조합원은 조합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, 출자금 및 조합 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

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4. 교육 및 훈련 권리: 조합원은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### 제7조 (조합원의 의무)

1. 출자 의무: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출자를 요구받을 수 있다.
2. 참여 의무: 조합원은 조합의 총회, 교육, 훈련 및 기타 주요 행사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.
3. 비밀 유지 의무: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, 기술, 거래처 등 조합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.
4. 규정 준수 의무: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, 규정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.
5. 책임 분담 의무: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.

### 제8조 (조합원의 권익 보호)

1. 공정한 대우: 조합원은 출자금 규모, 참여 정도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.
2. 고충 처리: 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불만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3. 분쟁 조정: 조합 내 분쟁 발생 시, 조합원은 조합 내부의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.
4. 퇴사 및 탈퇴 보호: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합은 출자금 반환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.

### 제9조 (조합원의 책임과 제재)

1.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: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이사회는 경고, 자격 정지, 또는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2. 손해 배상 책임: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3. 제명 절차: 조합원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에서 제명될 수 있다. 제명된 조합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총회에 제기할 수 있다.

## 제3장 총회

### 제10조 (총회의 구성 및 권한)

1.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,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된다.
2. 총회는 조합의 정관 변경, 주요 사업 계획 승인,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, 예산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.

### 제11조 (총회의 소집)
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되며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조합원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.
2. 총회의 소집은 최소 2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소집 이유 및 안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이사회

### 제12조 (이사회 구성 및 권한)

1. 이사회는 조합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, 조합의 대표 이사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다.
2.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며, 조합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진다.

#### 제13조 (이사회 의결)

1.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며, 이사장의 요구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다.
2.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.

### 제5장 재정 및 회계

#### 제14조 (출자 및 지분)

1.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며,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분으로 간주된다.
2. 출자금 및 지분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 배당이 결정된다.
3.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금액은 1좌당 100,000원으로 한다
4.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

#### 제15조 (이익 배당 및 손실 부담)

1. 조합은 매년 결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.
2. 손실이 발생할 경우, 조합원은 출자금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.

#### 제16조 (회계 연도)

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제6장 해산 및 청산

#### 제17조 (해산)

조합은 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. 해산 결의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
#### 제18조 (청산)

조합이 해산할 경우, 이사회는 청산 절차를 관리하며, 남은 자산은 조합원에게 출자금에 비례하여 분배한다.

#### 제19조 (협동조합 설립 업무의 위임)

1. 위임 대상  
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모든 준비, 절차, 법적 요건 충족 및 관련 업무 일체는 (주)마리온에 위임한다.
2. 위임 범위  
(주)마리온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, 서류 준비, 관공서 신고 및 등록, 초기 조직 구성, 재정 계획 수립, 사업계획서 작성, 조합원 모집 등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.
3. 업무 추진  
(주)마리온은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

문을 받거나 협력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4. 보고 및 승인

(주)마리온은 조합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,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5. 책임 및 보상

(주)마리온은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, 이로 인한 성과 또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. 조합 설립 완료 후, (주)마리온은 그 성과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2024.07.01.

**K 수직형 스마트팜 발전소 1호 협동조합**

